

---

202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

#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

---

※ “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”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『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4.



서울교육대학교

▶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◀

전형명	2022학년도	2023학년도
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* 전형 요소 반영률 - 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-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90% + 면접평가 10%	* 전형 요소 반영률 - 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-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80% + 면접평가 20%
	* 지원자격 -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	* 지원자격 -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
기타 (재외국민특별전형)	* 전형 요소 반영률 -1단계(3배수) : 서류 100% -2단계(1배수) : 1단계 성적 50% + 면접 50%	* 전형 요소 반영률 - 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
기타 (북한이탈학생전형)	* 전형 요소 반영률 -1단계(3배수) : 서류 100% -2단계(1배수) : 1단계 성적 50% + 면접 50%	* 전형 요소 반영률 - 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

# I. 주요 변경사항

## 1. 전형별 모집인원 조정

(단위: 명)

구분	전형명	2022학년도	2023학년도	비고
수시	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	50	50	
	학생부종합(사향인재추천전형)	30	30	
	학생부종합(교직원성우수자전형)	100	100	
	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자녀전형)	5	5	
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5	5	
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5	5	
	학생부종합(기회균형선발전형)	19	19	
	학생부종합(장애인등대상자전형)	11	11	
	기타(재외국민특별전형)	7	7	
	기타(북한이탈학생전형)	3	3	
	소계	235	235	
정시	수능위주(일반전형)	160	161	2021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결원 발생 1명 이월
	소계	160	161	
합계		395	396	

## 2. 수능최저학력기준

○ 수시 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, 학생부종합(교직원성우수자전형)

- 국어+수학+영어+탐구(사회/과학) **4개 영역 합 9등급**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
- 단,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,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경우 **4개 영역 합 11등급** 이내

○ 정시 수능위주(일반전형)

- 국어, 수학, 탐구(사회/과학) 영역의 평가와 별개로 **영어 3등급, 한국사 4등급 이내**

## 3.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

구분	전형유형	전형명	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
수시	학생부교과	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	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80% + 면접평가 20%
	학생부종합	학생부종합(사향인재추천전형)	1단계(2배수): 서류평가 100% (학교생활기록부) 2단계(1배수): 서류평가 50% + 면접평가 50%
		학생부종합(교직원성우수자전형)	
		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자녀전형)	
	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
	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
		학생부종합(기회균형선발전형)	
		학생부종합(장애인등대상자전형)	
	기타	기타(재외국민특별전형)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
		기타(북한이탈학생전형)	
정시	수능위주	수능위주(일반전형)	1단계(2배수): 수능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 + 면접평가 20%

## II. 수능최저학력기준 및 수능 가산점

시기	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 및 가산점
수시	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<b>4개 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</b> (단,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, 과학 탐구 2과목을 선택한 경우 <b>4개 영역의 합이 11등급 이내</b>), 한국사 4등급 이내</li> <li>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<b>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b></li> </ul>
	학생부종합(교직원성우수자전형)	
	학생부종합(사향인재추천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</b></li> </ul>
	학생부종합(다문화가정자녀전형)	
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
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
	학생부종합(기회균형선발전형)	
	학생부종합(장애인등대상자전형)	
	기타(재외국민특별전형)	
	기타(북한이탈학생전형)	
정시 (나)군	수능위주(일반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능반영영역- 국어, 수학, 탐구(사회/과학) (제2외국어, 한문은 미반영)</li> <li>■ 최저학력기준-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</li> <li>■ <b>가산점- 과학탐구 선택 시 과목당 3% 가산점 부여</b></li> </ul>

### Ⅲ. 지원자격

구분	전형유형 및 전형명	지원자격
수시	학생부교과 (학교장추천전형)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202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※ <b>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</b>
	학생부종합 (사향인재추천전형)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2023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	학생부종합 (교직인성우수자전형)	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	학생부종합 (다문화가정자녀전형)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	학생부종합 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·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<b>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</b> 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)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 소재 학교 이어야 함(동일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) ※ 부·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※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·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함

구분	전형유형 및 전형명	지원자격
	<p>학생부종합 (기회균형선발전형)</p>	<p>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.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</p>
	<p>학생부종합 (장애인등대상자전형)</p>	<p>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(단,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제외) 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</p>
	<p>기타 (재외국민특별전형)</p>	<p>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(예정자 포함)한 재외국민  ※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 ※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자격 인정</p>
	<p>기타 (북한이탈학생전형)</p>	<p>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</p>
<p>정시 (나)</p>	<p>수능 (일반전형)</p>	<p>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</p>